

수원고등법원 2020. 3. 19 선고 2019나13243 판결 [추가 공사대금 청구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(변경 전 상호: 주식회사 B)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, 박영수, 이우석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

담당변호사 배종희

변론 종결 2020. 2. 20.

판결 선고 2020. 3. 19.

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7가합24659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피고는 원고에게 317,725,5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. 9. 1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

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1.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317,725,5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(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 공동피고인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)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).

○ 제1심판결 중 각 "피고 C"를 "피고"로, 각 "피고 D"를 "D"로, 각 "피고들"을 "피고 및 D"로 각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3쪽 제1, 2행(표 부분 제외)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"다.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. 한편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I(이하 'I'이라 한다)의 피고에 대한 분할 대출금으로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, 2016. 6. 29.경부터 2016. 9. 12.경까지 10회에 걸쳐 I에 자금집행 요청서(원고와 피고가 공동날인함)를 보냈으며, 이에 따라 원고는 I으로부터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1억 원(부가가치세 제외)을 송금받았다(갑20호증, 을 1호증의 1 내지 10).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에서 정한 부가가 치세 1억 1,000만 원에 대하여 별도 소송(수원지방법원 2017차전14388호)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임의로 지급받았다(다툼

없는 사실, 을 2호증).

라. 원고는 2016. 8. 30.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2억 1,000만 원(부가가치세 포함)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(을 3호증)."

○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(표 부분 제외)부터 제5쪽 제7행(표 부분 제외)까지 부분을 삭제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7쪽 제10행의 "증거가 없다"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.

"{그 밖에 원고는 피고 또는 D에게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정한 공사량(규모),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또는 예정공정표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}"

○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의 "이유 없다"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.

"{또한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견적서를 기초로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범위가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(원고 스스로도 최초에 이 사건 견적서상의 금액이 아닌 8억 원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), ② 원고가 추가공사의 내역이 기재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F호텔 추가공사 내용 및 내역서(갑 5호증)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8. 1.경 작성된 것인 점, ③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. 8. 30.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전액인 12억 1,000만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추가공사의 내용과 범위를 알기 어렵다}"

○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부터 제8쪽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예비적으로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소한 1 에 제출된 공사대금 11억 2,700만원의 견적서(부가가치세 제외, 갑 20호증)상의 공사내역 및 그 대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, 이를 기준으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(원고의 2020. 2. 20.자 준비서면 참조).

나. 판단

그런데 갑 8,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원고 스스로 제1심법원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에 제출한 견적서는 대출용으로 작성한 허위의 견적서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던 점, ② 원고가 당초 1에 제출한 견적서라고 하면서 견적서(갑 8호증, 위 갑 20호증 견적서와 거의 대부분 유사하다)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, 당시 위 증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일일이 적시하여 붉은 색으로 기재하였던 점{예를 들어 갑 8호증의 6쪽(전기공사)에 '현장의 면적은 약 820평 정도입니다. 견적서는 6,245평으로 기재되어 있다.'라고, 9쪽(간판공사)에 '모텔 호텔의 간판은 최소 1,800만 원에서 3,5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. 소형 점포 수준의 견적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.'라고 기재되어 있다. 이와 관련하여 갑8호증 견적서의 해당 부분(6, 9쪽)과 갑 20호증 견적서의 해당 부분(9, 12쪽)은 그 기재사항이 동일하다}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재권, 판사 이상호, 판사 조효정